의안번호	2203890
의 뢰 인	성일종 의원
회 답 일	2024.10.02.
추계번호	24C386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 (임상교수요원)	(제1항)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으로서 제8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19조 (출연 또는 보조 등)	(제3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1]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기존 출연금 및 보조금 규정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2]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규정을 신설

1) 안 제16조는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학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는 '22년 이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4년 50명, '25년 31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24년 7월 기준 공공임상교수 정·현원은 정원 50명·현원 32명임(서울대학교 포함)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원의 기준·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지출규모에 대한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출연금'(법 제19조제1항),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에 대한 '보조'(법 제19조제2항),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를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정부 보조'에 대하여 규정(법 제19조제3항)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에 총 111,369백만원(2024년 예산기준)을 편성[3)]

[표 1]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교육부) 예산 산출세부내역

예 산	산출내역
사업출연금(350-02) 105,019,000천원	가. 시설확충 및 보수 (56,262,000천원) 나. 장비구입 및 교체 (31,085,000천원) 다. 정책사업 (17,672,000천원)[4)]
민간경상보조(320-01) 6,350,000천원	정책사업 (6,350,000천원)[5)]

자료: 교육부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 개정안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될 경우, '기존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우선 충당되던 운영비 등'과 '대학병원의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이 실시될 수 있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이 실시될 구체적 내역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바, 관련 사업 지원 등[6)]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보건복지부에서도 771억원(2022년 기준)을 국립대병원에 지원('23.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 임상교육훈련센터건립비

5)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

6)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2023.10.)'에서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 참고로 '24년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개혁 분야별 투자계획(안) 중 권역 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을 수도권 대형병원과 동일 수준의 선도적 지역병원으로 양성하는데 1,836억원('25년),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및 특화 연구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하여 128억원('25년), 국립대병원 시설·장비를 위한 829억원('25년, 교육부)이 계획된 바 있으나[7] 해당 실행방안이 1차 계획안이고 '24년 말과 '25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므로 향후 사업 증가 및 재정 투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과 관련된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교수 정원 대폭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력확보',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등 R&D 투자', '중증·응급 보상 강화,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등 공공정책수가', '노후 의료 시설·장비 개선 지원 확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등 인프라 첨단화'와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및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 등을 발표한바 있음

7)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보건복지부, 2024.08.30.) 참조